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중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96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진중오 · 이만희 · 김상훈
박정훈 · 김소희 · 김용태
이양수 · 최형두 · 박정하
최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의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서는 이스포츠 대회 개최에 제약이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시설을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

를 유연하게 연계·활용하고 이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
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생략)</p> <p><u><신 설></u></p>	<p>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u> <u>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u> <u>경우 관할 지역 내 「체육시설</u> <u>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u> <u>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u> <u>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u> <u>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u></p>